

부산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단3434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은

변 론 종 결 2023. 2. 2.

판 결 선 고 2023. 2.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3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2020.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3. 접수 제16098호로 마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1995. 3. 25.부터 1997. 12. 29.까지 돈을 대여하였고, 2015. 8. 4.경 C에 대하여 원금 40,980,43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7,554,54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5980)를 제기하였고, 2015. 12. 10.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8,534,978원 및 그 중 40,980,436원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12. 25. 확정되었다.

다. C은 2020. 6.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3분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0.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은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2022. 12. 30.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등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와 C은 등기부상 기재와는 달리 실제로는 1995. 5.경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에 대하여 238,534,978원 및 그 중 40,980,436원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아버지 D은 1994. 2. 19. 사망하였고, D의 배우자 E 및 자녀 F, G, C, H, I, 피고, J, K, L, M이 1994. 6.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 비율에 의한 지분에 관하여 1994. 2.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J는 199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3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1995.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F, G, I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3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L, M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3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01. 12. 4. 피고에게 2001.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가 2001. 10. 11. F, I에게 각 16,000,000원을 지급하고, 2001. 12. 4. L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C에게 부과되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1998. 9. 2. N에게 1998. 9. 2.자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존을 위해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 피고도 1998. 9. 16.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소유의 133분의 28 지분에 관하여 1998.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피고는 2020. 6.경에 이르러서야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6,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과 피고가 1995. 5.경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동생인 피고에게 16,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어머니 E를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고, C과는 연락이 두절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매매대금으로 15,000,000원을 실제 지급하고, 2020. 5.경 이 사건 지분에 이루어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한 사실, 피고가 C에게 부과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피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압류를 해제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지분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경아

별지